
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25. 11.

제안자 :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

수정이유

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고, 하위법령 정비에 소요되는 시일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조정하는 한편,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임.

수정주요내용

- 가.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‘환경부령’을 ‘기후에너지환경부령’으로 조정하는 등 용어를 정비함(안 제60조제3항).
- 나.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하도록 하고,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경과조치를 추가함(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).
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60조제3항 중 “환경부령으로”를 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”로,
“위반행위 차수에 포함해야”를 “위반행위의 횟수에 포함하여야”로 한다.

안 부칙 본문을 삭제하고, 제1조 및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행정처분의 기준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
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제6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
의 규정에 따른다.

수정안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60조(행정처분의 기준) (생략)	제60조(행정처분의 기준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	제60조(행정처분의 기준) ① · ② (개정안과 같음)
<u><신설></u>	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하나의 처분권자가 행정처분을 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다른 처분권자에게 통보해야 하며, 통보받은 처분권자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(허가취소처분은 제외한다)을 할 수 없다.	
<u><신설></u>	③ 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 사실을	③ ----- -----

	<u>통보받은 처분권자</u> <u>는 환경부령으로</u> <u>정하는 바에 따라</u> <u>그 사실을 위반행</u> <u>위 차수에 포함해</u> <u>야 한다.</u> <u>부칙</u> <u>이 법은 공포한 날</u> <u>부터 시행한다.</u>	----- <u>-기후에너지환경부</u> <u>령으로-----</u> <u>-----위반행위</u> <u>의 횟수에 포함하</u> <u>여야-----.</u> <u>부칙</u> <u>제1조(시행일) 이 법</u> <u>은 공포 후 6개</u> <u>월이 경과한 날</u> <u>부터 시행한다.</u> <u>제2조(행정처분의 기</u> <u>준에 대한 경과</u> <u>조치) 이 법 시</u> <u>행 전의 위반행</u> <u>위에 대한 행정</u> <u>처분에 관하여는</u> <u>제60조의 개정규</u> <u>정에도 불구하고</u> <u>종전의 규정에</u> <u>따른다.</u>
--	--	--
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소회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82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9.

발 의 자 : 김소희 · 김대식 · 엄태영
김선교 · 조경태 · 최수진
이헌승 · 김상훈 · 강승규
박충권 · 김승수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지정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환경청장과 일반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·일반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시설의 동일한 한 가지 법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.

이로 인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두 개의 행정주체가 중복된 행정처분을 함에 따라 업체에 과도한 행정처분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잉 제재를 방지하려는 것임(안 제6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).

※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

가.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‘환경부령’을 ‘기후에너지환경부령’으로 조정하는 등 용어를 정비함(안 제60조제3항).

나.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하도록 하고,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경과조치를 추가함(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).
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0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하나의 처분권자가 행정처분을 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다른 처분권자에게 통보해야 하며, 통보받은 처분권자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(허가취소 처분은 제외한다)을 할 수 없다.
-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 사실을 통보받은 처분권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위반행위의 횟수에 포함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행정처분의 기준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

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제6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0조(행정처분의 기준)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60조(행정처분의 기준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하나의 처분권자가 행정처분을 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다른 처분권자에게 통보해야 하며, 통보받은 처분권자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(허가취소 처분은 제외한다)을 할 수 없다.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 사실을 통보받은 처분권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위반행위의 횟수에 포함하여야 한다.
<u><신 설></u>	